

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

1. 일반 현황

- 업 소 명 :
- 소 재 지 :
- 대 표 자 :

2.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

오 염 물질명	배출농도 (mg/L)	할당 오염부하량 (kg/일)	지정 배출량 (L/일)	일일유량 (L/일)	지역별 부과 계수	배출기간 (일)	오염총량 초과과징금 부과에 따른 위반횟수

◦ 시료채취일: ◦ 개선완료일: (개선기간 중 휴무일: 일)

가. 수질오염물질 1kg당 연도별 부과단가: 원(A)

나. 초과오염배출량(일일초과오염배출량×배출기간): kg(B)

일일초과오염배출량: kg

※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: (일일유량×배출농도×10⁻⁶ - 할당 오염부하량)값과 [(일일유량-지정배출량)×배출농도×10⁻⁶]값 중 큰 값

다. 초과율별 부과계수: (C)

라. 지역별 부과계수: (D)

마. 위반횟수별 부과계수: (E)

바. 감액: (F)

사. 오염총량초과과징금=(A)×(B)×(C)×(D)×(E)-(F) 원

가산금: 오염총량초과과징금×3/100 원

납기 후 과징금: 오염총량초과과징금+가산금 원

※ 비고: 바목의 감액이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조의7제4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
작성일자: 년 월 일

작 성 자: (서명 또는 인)